

영재교육원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

□ 제정 : 2010. 03.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다양한 학문 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육성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의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의력과 탐구사고력 및 문제해결력이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의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수원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이라고 칭한다.

제3조(위치) 본 영재교육원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 2-2 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 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 영재교육원의 수업연한은 해당 학년별로 1년으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 영재교육원에 해당 학년별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a. 국악 -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4~6 학년과 중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자로
b. 인문·사회 -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5~6 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2. a. 국악 -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아 1차 서류전형 2차 영어시험 및 실기면접 평가에서 선발 예정인원 내의 등 위의 성적을 얻은 자
b 인문·사회 -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아 2단계 영재성 검사와 3단계 학문 적성 검사 4단계 1주일 정도의 예비프로그램배치 후 관찰 및 면접 평가에서 선발 예정인원내의 등위의 성적을 얻은 자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12조 2항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입학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전형 절차를 거쳐 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 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 (2)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 (3)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4)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자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제6조(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학급 수는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2 학년별 각1개 학급으로 총3개 학급으로 하며, 각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편성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평가

제7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캠프활동 및 조별연구 활동(2인1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과활동:

가. 국악 - 영재교육전문기관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보급하는 교재를 중심으로 해당 악기 실시 및 종합이론 및 기타영역에 총100시간 분의 지도내용을 선정·편성

2. 캠프활동

가. 매년 하계와 동계 방학 기간(7월, 12월)중에 년2회 실시(2박3일간)

나. a 국악 - 영어수업과 실기, 종합이론 및 양악과 세계음악의 이해를 중심으로 함

b 인문·사회- 영어수업 및 논리와 사고 및 창작 그리고 세계와 문화 인류문명과 세계사 등을 내용으로 하여 5인 1조 편성하여 프로젝트 과제 수행 후 영어로 연구 결과 발표함

제8조(수업일수) 각 학년학급별로 주2회(1회당 2시간)씩 년 30주로 총 60일 로 한다.

제9조(평가) 본 영재교육원은 비정규과정(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년1회 연간활동 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서술식 평가 하여 그 내용을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제5장 학년, 학기, 휴업일

제10조(학년, 학기) 매 학년은 당해 4월1일부터 12월 30일 까지로 하며 학기구분은 하지 않는다.

제11조(휴업일) 연간 계획에 의거 교과활동과 캠프활동 실시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 및 법으로 임시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6장 과정의 수료

제12조(수료) 수료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학년별 교육과정의 수료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각 활동의 참여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시간 수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제7장 입학

제13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시작 일로부터 4주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입학결정) 본 영재교육원의 입학은 학칙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5조(입학서류) 본 영재교육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서약서)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증인연서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증인)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제8장 휴학·퇴학 및 상벌

제18조(휴학) 본 영재교육원은 비정규과정인 관계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휴학은 불허하며 퇴학으로 처리한다.

제19조(퇴학) 보호자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였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자는 퇴학으로 처리한다.

제20조(표창) 품행이 바르고 교과활동, 캠프활동, 조별 연구 활동 분야의 성적이 우수한 자는 매 학년말에 원장 표창을 실시한다.

제21조(징계)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 출석정지
2. 퇴학

제9장 수업료 및 장학금

제22조(수업료,입학금) 수업료는 국가 및 지방에서 지원하되 학생의 현장체험 학습이나, 캠프활동에 필요한 금액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입학생 선발을 위한 필요한 전형료 수수료는 수여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장학금) 교육영역의 우수자에 수여하는 외부 장학금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선발·추천한다.

부 칙

제1조 : 본 학칙은 2010. 3. 1부터 시행한다.